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1
2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8
3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5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략 담 당 관	20
5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 략 담 당 관	25
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행 정 과	31
7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 정 과	35
8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소 통 과	39
9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45
10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49
1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55
1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61
1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복 나 눔 과	66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74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5. 30.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도록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제50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5. 08. ~ 05.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제50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참고

-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과 운영 등에 연간 51백만원의 예산 소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제3조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제4조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추진목표 및 방향 -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5조	• 지원사업 - 교육 자료 개발 - 교육기관 및 단체 교육 - 전문강사 양성	
제6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함	
제7조~제8조	•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이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전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인류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이면에는 이로 인한 허위조작 정보, 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교육 현장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논의되고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현실임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싱가포르 등 아시아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과 과정에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내 동아리,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읽고, 경험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취지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 안 제6조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3. 5. 16.>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 ③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순번	조례명	지역명	시행일자
1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경상남도	2022. 04. 14.
2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2023. 10. 11.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서울 강남구	2023. 11. 03.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대구 수성구	2023. 11. 10.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서울 금천구	2024. 07. 1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서울 동작구	2024. 11. 07.
7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대구 달서구	2025. 04. 01.
8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2025. 05. 08.
9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인천 남동구	2024. 05. 09.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5. 5. 30.]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5. 30.] [대통령령 제35404호, 2025. 3. 26., 일부개정]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5. 30.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안 제5조)

마. 위원회 심의(안 제6조)

바.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 제7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13. ~ 2025. 5.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청소년 기본법」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해당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함
- 정부는 2015년부터 전국 9세 이상 ~ 21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에서는 2,89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함

☞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 **(학교를 그만둔 시기)** 고등학교 62.2%,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 순
 -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등
-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10.8%, '21년 대비 2.4%p 낮아짐
 - 현재흡연을 19.3%('21년 대비 8.8%p ↓), 현재음주를 21.2%('21년 대비 7.5%p ↓)
- **(은둔 경험)** 6개월 이상 6.4%
 - 은둔계기 :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
 - 은둔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24.5%) 등
- **(진로)**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계획은 검정고시 69.5%, 대학진학 준비 29.6%
-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경험한 어려움)** 선입견·편견·무시(26.2%), 새로운 친구 만들기 어려움(25.0%), 의욕없음(24.2%), 진로찾기 어려움(23.2%) 등으로 응답
- **(정책수요)**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순으로 조사

- 조사결과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62.2%)가 가장 많고, 중학교(20.8%), 초등학교(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특이점은 초등학교 때 학업 중단 비율이 '21년 9.0%에서 '23년 17.0%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임.
- 그 밖에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5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책적 지원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자립수당 지원, 건강검진 제공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에 대한 수요가 '21년 7순위에서 '23년 2순위로 상승폭이 컸으며 교통비 지원,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지원, 진로탐색 체험, 건강검진 제공, 직업교육·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연도별 정책수요 비교 >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연도별	2018년	검정고시준비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학정보 제공	각종 질병치료	진로탐색 체험
		2.95	2.94	2.88	2.88	2.86
	2021년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학정보 제공	진로탐색 체험
		3.20	3.05	3.04	3.03	3.02
	2023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3.33	3.19	3.18	3.18	3.12
구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연도별	2018년	청소년활동 바우처	청소년전용일자리	직업교육·훈련	각종 고민상담	학습진로멘토, 진로/ 직업 통합프로그램
		2.86	2.84	2.82	2.79	2.78
	2021년	각종 질병치료	청소년활동 바우처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	직업교육·훈련	진로/직업 통합 프로그램
		3.00	2.99	2.97	2.94	2.92
	2023년	직업교육·훈련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자립수당 지원		건강검진 제공	각종 질병치료/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
		3.10	3.08	3.08	3.04	3.02

※ 청소년활동 바우처 : 스포츠, 문화예술, 여가 프로그램 등 이용권

-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내역

시·군	조례 제정	시·군	조례 제정	시·군	조례 제정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2020.12.29.
사천시	2015.12.30.	김해시	2017.07.28.	밀양시	2024.12.26.
거제시	2020.12.29.	양산시	2017.09.15.	의령군	2016.03.30.
함안군	2019.12.24.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시·군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사림동),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4층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삼동동)3층 창원시창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주시	진주시북장대로 6번길 9(인사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통영시	통영시 해미당1길 33 (무전동)5층 통영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천시	사천시문선4길 23, 사천시청소년수련관 3층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가락로 176번길 3
밀양시	밀양시삼문송림길26, 청소년수련관2층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75 (고현동)1층, 거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양산시	양산시웅상대로 1009-2, 지하1층
의령군	의령군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문화의집 2층
함안군	함안군가야읍 말산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창녕군	창녕군창녕읍 화왕산1로 46, 창녕청소년수련관 5층
고성군	고성군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3층
남해군	남해군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하동군	하동군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2층
산청군	산청군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4층 함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창군	거창군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3층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합천리, 청소년문화의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없는 지역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성격이 유사한 조례나 상위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2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법령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심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
- 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48조·제60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68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1,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15.~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48조·제6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6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참고

-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연간 1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 이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근거가 명확함.
- 두 위원회의 역할을 보더라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상황 전반과 재무제표, 기금운용 현황 등 예산서와 결산서의 적정성을 모두 심의하므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심의하는 예산성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거창군에서는 누리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금융기관 등에 오프라인 채널인 ‘예산 낭비 신고 우체통’도 운영하고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진다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로 이어진 관계를 생활인구 확대에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부자 예우 사항 확대 등을 정함(안 제17조)
 - 1)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 2)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제12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기부자 예우 사항 확대로 지속적 기부문화 확산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제12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부증서 발급과 기부자 감면 혜택을 신설
하고 법 개정 사항 및 조문 현행화를 목적으로 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에서 정한 답례의 품목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조문 현행화

제7조 제3호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시행령과 일치
제8조	• 기부금의 사용목적	• 삭제	
제17조	• 기부자 예우 • (제1항)	• 기부자 예우 • (제1항)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 발급	추가
	• (신설)	• (제3호)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제3호)	• (제4호)	호변경

- 개정안 제7조제3호와 제8조제1항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④ ~ ⑥ 생략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 개정안 제17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 발급
-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다만, 기부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 기부 유도를 위해
서는 자신의 기부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유지를 하고 기부금이 사용된 프로
젝트의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기부자의 이름을 특정 프로젝트에 명명하거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은 기부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해 더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822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설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정함(안 제3조~제8조)
 - 1)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관계 공무원
- 나.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지원계획, 주민지원사업 신청, 주민지원협의체를 정함(안 제9조~제12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본예산 확보예정
-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근거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참고

-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3천만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사용료 징수액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임.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 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변지역, 유치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요내용	비 고
제1조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근거함	
제2조 (정의)	• 유치마을: 남하면 대야마을 • 인접마을: 남하면 산포, 오가, 용동, 월포, 남불, 전척 • 유치면지역: 남하면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12.31.까지로 함.	
제5조	• 기금의 조성(재원) - 거창군의 <u>일반회계 전입금</u>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운영부터 10년간) -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 기금의 용도 -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 경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유치마을 지원한도액은 60억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 이내	
제67	• 기금의 관리·운용 - 금고에 위탁	
제8조	• 회계관계 공무원 -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제9조	•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 부대시설 운영, 일자리 우선 제공, 사용료 면제	
제10조 ~ 제12조	• 주변지역 주민 지원계획 등 • 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 주민지원협의체	
제13조 ~ 제19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	

○ 화장시설은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간 다툼현상이 극심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적·지역 간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지난 6월 1일에는 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6개 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면서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 반려동물 놀이터, 휴양림, 파크골프장,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 양주시의 경우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코그쉬르코고르덴 공동묘지와 같이 공원형 추모 공간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조성 재원확보를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이 필요하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덧붙여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는 호응 부족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폐지의 필요성 : 타당함

- 2012년 이후 사실상 운영 중단으로 실효성이 없음.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거나 거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 거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게 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었음.
- 혜택으로는 수승대 관람료 면제,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지역소식, 공연, 축제, 농산물 특판행사와 같은 소식 정보 제공 정도로 실제 흡인력이 약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전남 강진군은 사이버 군민제도인 ‘강진품애 온 군민’이 2025년 5월 14일 기준 누적 회원 수 10,584명을 돌파하면서 강진군 전체 인구(2025년 4월 기준 약 3만 2천 명)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2025년 2월 5일 정식 오픈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 충북 보은군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사이버 군민제도인 정이품보은군민제도를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거창군은 2023년 5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사실상 2012년 이후부터 운영을 중단한 사업이므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폐지의 필요성 : 타당함

-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신설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친절 거창운동, 아립1004운동 추진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3월 145명의 각계각층의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진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발대식을 가졌으며, 기초질서는 나부터! 친절은 거창하게! 아립 1004는 다함께!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음

- 덧붙여, 본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관내 학교 관계자 간담회, 표어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군민들에게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알리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
- 13년이 지난 현재 아림1004운동은 거창군만의 복지안전망으로 이미 안착하였고, 그동안 군민의 기초 질서에 대한 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다고 보여짐
- 또한, 2019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없으며, 각종 캠페인과 관련 단체의 계도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조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 12. 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 나. 선정대리인 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9조)
 - 1)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 2)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
 - 3)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 다.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이관함(안 부칙 제2조)
 - 1) 현행: 재무과 소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근거
 - 2) 변경: 민원소통과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93조의2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8.~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62조의2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1호)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호)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25조의2	
	신설	(제6호) -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시행규칙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문 변경
제18조	신설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19조	신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12.31.)으로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의 제1항 제5호에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조를 정비하고 안 제17조~제19조를 신설하였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⑤ (생략)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소유재산의 가액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를 신설하였음.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생략>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생략>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이하생략 ~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운영 방법에 대해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함(안 제3조)
 - 1) 현행: 연임제한 없음
 - 2) 변경: 세 차례만 연임 가능
- 나.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21조)
 - 1)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3,10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위원회 운영의 명확화
- 2027년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준공 대비 기업유치 특별 지원 확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2026년 투자완료예정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31억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입주예정기업 보조금 지원에 42억원 정도 소요 예상.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상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 연임 규정 없음	• <u>최대 3회까지</u> 연임	
제21조 (기업유치 특별지원)	• 특별지원 대상 - 제12조~제18조	• 특별지원 대상 - 제12조~ <u>제19조</u>	지원대상 추가

-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는 연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특정 인물에게만 기회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 새로운 인재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임.
- 인천시의 경우 올해 7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콘텐츠 사업화, 인재양성, 글로벌 진출 및 IR 기반 조성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숙박, 음식, 체험 활동 등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신달자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달자문학관의 설치근거, 명칭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문학관의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제한 등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라.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을 정함(안 제8조)
- 마. 이용 신청, 이용의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바.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별표 1·2)
- 사. 이용자의 설비,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550천원 추경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4. 29.~5.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문학관 리모델링 완공대비 운영기준 마련으로 원활한 시설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2명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매년 1억원 정도 소요 예상.

※ 2025년 소요예산 30,550천원 추경예산 확보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거창군 신달자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문화사업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 ~ 제2조	• 목적, 설치 등 - 신달자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전시실, 강의실,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함 - 문학관은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둠.	
제3조	• 사업 -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수집 등 - 거창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 -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	• 휴관일 - 매주 수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일요일 제외	
제5조	•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제6조	• 관람료 - 무료	
제7조 ~ 제8조	• 관람 제한, 소장품 구입 및 기증	
제9조 ~ 제13조	• 이용신청 및 이용료 등 - 이용료: 1일 10,000원, 냉난방 1시간당 5,000원	별표1 참고
제14조	• 위탁운영	

- 문학관 운영은 문화적 자산 형성, 관광 산업 발전,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 지역 이미지 홍보, 지역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으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재정 지원,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임.

☞ 신달자문학관 리모델링 현황

구 분	당 초	리모델링(안)	비고
용 도	청년농창업지원센터	문학관	
연면적	282.04㎡(85.31평)	302.22㎡(91.42평)	20.18㎡증
1층	○ 면 적 : 174.72㎡(52.85평) ○ 시설물 : 사무실, 취사공간, 회의실, 락커(사물함), 야외데크	○ 면 적 : 187.14㎡(56.61평) ○ 시설물 : 안내 및 사무실, 전시실, 세미나 및 강의실	12.42㎡증
2층	○ 면 적 : 107.32㎡(32.46평) ○ 시설물 : 숙소 3, 샤워실, 야외데크	○ 면 적 : 115.08㎡(34.81평) ○ 시설물 : 전시실, 집필공간, 카페	7.76㎡증

-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문학관 현황

권역	명 칭	위 치	개 관
합계	40개소		
수도권 (15)	김수영문학관	서울시 도봉구 해동로 32길 80	2013.11.27.
	김영진문학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12번길 6-29 새벗하우스 지하1층	2011.11.11.
	노작홍사 문학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06	2010.3.18.
	만해기념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로 792번길 24-7	1998. 4월
	박두진문학관	경기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2018.11월
	영인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99-3	2001.1.26.
	윤동주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2012.7.25.
	이상의집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2009년
	잔아문학박물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사랑제길 9-9	1996.5.1.

수도권 (15)	조병화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2길 6	1993.2.6.
	청류재수목문학관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문이길 14-17	1993년
	한국영화박물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1974.1.18.
	한무숙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9길 20	1993.2.1.
	한국현대문학관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파라다이스 빌딩	1996.12.24.
	황순원문학관 소나기마을	경기도 양평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2009년
강원권 (5)	김유정문학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2002.8.6.
	박인환문학관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15	2012.10.5.
	백담사만해마을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2003.8.8.
강원권 (5)	월하이태극문학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1014-16	2010.7.16.
	이효석문학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2002.9.7.
영남권 (4)	구상문학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191	2002.10.4.
	김달진문학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로59번길 13	2005.10.
	박경리문학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2016.5.4.
	이육사문학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2004.7.31.
충청권 (4)	오장환문학관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으로 5길 12	2006
	원서문학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855	2004.3.
	정지용문학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56	2005.5.14.
	충남문학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3	
호남권 (7)	가사문학관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877	2000.11.11.
	목포문학관	전남 목포시 남농로 95	2011.9.30.
	조정래아리랑문학관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1길 24	2003.5.16.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 622-38	2003
	채만식문학관	전북 군산시 강변로 449	2013.4.28.
	태백산맥문화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2008.11.21.
	혼불문학관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	2004.10.20.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활동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창군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을 신설함(안 별표)
- 나. 사무의 위탁을 정비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7,360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우수 예술인의 지역 내 체류·활동 유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참고

-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수당 회별 8만원 등 연간 4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조례 개정안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5년 신규·특수 시책인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체류공간 조성」 사업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제2항 별표의 내용 중 지원분야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세부사업 내용에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 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사무의 위탁)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함.
- 예술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관람하거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예술가들이 머무는 동안 숙박, 식사, 재료 구매 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면 단순한 창작 공간으로만 머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임
- 관료주의적 절차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의 범위를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별표]지역문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 <u>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 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신 설></u>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 ○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

<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체류공간 조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2030년
- 위 치: 수승대 일원
-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빈집 임대 계약(5년), 리모델링 2개소
 -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공연예술인 4명, 6개월)
 - ↳ 지원내용: 공간 제공(축제극장), 창작활동료 지원
 - ↳ 지원조건: 입주기간 중 성과물(공연, 작품)제출, 관내 예술(강사)활동
- 소요예산: 147백만원(군비)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 1)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센터
- 나.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별표 2·3, 삭제 별표 4)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상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명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 조항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센터	용어변경
제4조~제6조	• 사용허가 • 사용허가 취소 등 • 사용료의 징수 등	• 이용신청 등 • 이용허가 취소 등 • 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 이 밖에 별표2(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과 별표3(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따른 법적 인력기준(1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근 4회 연속 최하등급(F)을 받아 왔음.
- 거창군은 현재 삶의 쉼터, 노인복지회관,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폭 늘어났으며, 기능 또한 문화교실,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이동복지관 등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제안이유

-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이후 유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로 용어 등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별표 1~3)
 - (현행) 공설공원묘지
 - (변경) 공설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포괄하는 법적 용어
-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
- 다.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에 대한 유골 및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제20조·

제23조· 제28조,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권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8조

-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권고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024.12.3.)에 따른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자연장지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명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전 조항	• 공설공원묘지	• 공설장사시설	용어변경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 (제2호)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2호)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제3호)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3호) - 삭제	
	• (제4호~제9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등	• (제4호~제9호) - 삭제	
	• (제10호)	• (제3호)	호 변경
	• (제11호)	• (제4호)	호 변경
제6조	•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 연장기간 단축	• 사용기간 및 제한 - (제1항) 사용기간 30년, 연장 신청시 5년~3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 (제2항)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 기간 내 미반출 시 집단매장 또는 봉안	
제7조 (유골·사용료 등 반환)	<단서조항 신설>	• <u>다만</u> ,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함	
제8조	• 분묘의 형태 등	• 분묘 및 <u>자연장지</u> 의 형태 등	자연장지 추가

- 공설 봉안시설 사용기간 및 제한을 전국 평균에 맞춰 30년
으로 정하고, 연장 신청 시 5년~30년 이하의 범위로 한 차례
만 연장가능 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연장지 설치 규정을 명시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자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자연장, 산분장이 바람직하므로 인식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자연장, 산분장보다 봉안당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

<봉안시설 설치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 천구)

구 분		개소수			봉안시설 안치 현황(천구)			잔여율 (%)
		봉안당	봉안묘· 탑·담	합계	봉안능력	기 봉안	잔여분	
합 계		448	163	611	6,550	2,486	4,064	62.0
공 설		146	52	198	2,044	1,349	695	34.0
사 설	소계	302	111	413	4,506	1,137	3,369	74.8
	법인	83	55	138	3,087	745	2,342	75.9
	종교	219	56	275	1,419	392	1,027	72.4

※ 개인.종중.문중 시설 제외

산·바다 유골 뿌리는 '산분장' 확산...

뉴시스(2025.05.27. 보도자료 참고)

-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국비지원)**
 - ※ 산분장지 1㎡당 10만원 지원,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
 - ※ 신청지자체 :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
- ▶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히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

- 계약종료 후 자체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종료 후 처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종료에 따른 유골 처리방식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목적

- 공설봉안시설별 이용(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보관기간 및 처리방법 등 지자체별·시설별 운영방식 상이
- 전국의 봉안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각 지역·시설 간 운영 개선 방안 검토

□ 법적 근거

- (공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에서 지자체장의 공설봉안 시설 설치·조성·관리 의무 및 설치기준 규정
 - * (장사법 제13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 제외*,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관할 공설 봉안시설 설치·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규정 부재: 제주시(6개), 전남 해남군(1개, 화원관광단지 개발 무연분묘 안치) 등 총 7개소

□ 공설 봉안시설 운영 현황(‘24년 9월말 기준)

- (이용가능기간) 기본이용기간은 15년 이상~30년 미만이 64.7%, 최대이용기간은 30년 이상~50년 미만이 47.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봉안시설 이용 가능 기간>

(단위 : 개소, %)

기본 이용기간						최대 이용기간					
계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15년이상 ~30년 미만	30년이상 ~45년 미만	45년 이상	계	10년 미만	30년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60년 이상	제한 없음
201	1	20	130	49	1	201	7	96	1	83	14
100%	0.5	10.0	64.7	24.4	0.5	100%	3.5	47.8	0.5	41.3	7.0

-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기간 5년이 30.3%로 높은 비중 차지,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시설은 40.8% 차지
 - ※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보관하고 있는 유골은 총 19,275건

- 장사법령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골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기간은 주로 해당 규정 준용

* 「장사법시행령」 제9조에서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기간 종료 후 산분 또는 자연장하도록 규정

<봉안시설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별도 보관기간>

(단위 : 개소, %)

계	1년 미만	1년	5년	10년	규정없음
201(개소)	16	35	61	8	82
(%)	8.0	17.4	30.3	4.0	40.8

- (처리방법) 기간 종료 후 처리방식은 산분 또는 자연장이 62.2%, 집단매장이 15.9%이며, 별도 규정이 없는 시설도 20.9% 차지

<봉안시설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처리방식>

(단위 : 개소, %)

계	산분 또는 자연장	집단매장	규정없음	기타 (임의처리)
201(개소)	125	32	42	2
(%)	62.2	15.9	20.9	1.0

□ 향후 계획

- '25년 봉안시설 설치사업 지원, 집행관리 철저('25년 정부안 230억, 18개소)
- 자연장 및 산분장 활성화 위한 장사문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계속)
 - 분묘 개장을 통한 자연장 전환 유도를 위한 공익캠페인 지속 전개
-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운영기준이 미비한 지자체(봉안시설)에 관련 규정 정비 요청('24.12.3)

□ 행정 협조 사항

- (지자체) 공설봉안시설 운영 규정 정비('25.6월까지) 및 결과 보고('25.7.11)
 - 계약(이용)기간 종료 후 관련 운영기준이 없는 봉안시설은 규정 신설, 운영기준이 있더라도 내용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규정 개정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서비스 기능시설 조성 및 사회단체 및 공동체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사업내용 : 가조 거점센터 신축 A=637.5㎡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군 2,800, 도 360, 군 840)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 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시기	사유	비고
		소 재 지	면적(m²)				
총 계				3,444,000			
취득	건축물	가조면 수월리 453	637.5	3,444,000	2025 ~ 2027	가조 거점센터 조성	신축

※ ¹⁾기준가격 적용 : 공사비(4,630천원/㎡) + 설계·감리 등 부대비(492,000천원)

다. 추진경과

-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023. 6. ~ 2024. 8.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4. 8.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8. ~ 11. :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 2025. 2.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라. 향후계획

- 2025. 5. : 설계공모 심사
- 2025. 6. ~ 2025. 11. : 실시설계 추진
- 2025. 12.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생활기반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성 및 생활공간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상승
- 문화·복지·체육·휴게를 즐길 수 있는 중심 거점지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바. 담당부서 검토

시 설 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가조 거점센터 (가조면 수월리 453)	신축	▶ 가조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현재 거창군 소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 조성하여 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휴게 활동 공간 제공하고자 함 ⇒ 기존 주차장 시설 철거 후 거점센터 신축 반영	

3.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4.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5.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검토의견

①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권은

- 2022년 6월, 2023년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조면 거점 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2024년 8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 하고, 거창군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음.

※ 우리군 농촌협약(농촌지역개발사업) : 13개 지구 / 34,753백만원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진도 (%)	비고
계 (13개 지구)			34,753			
농 촌 중 심 지 활 성 화	거창읍	2023 ~ 2027	9,000	▶ 청년창업지원센터+거창활력센터 복합화 ⇒ 기본계획 수립 중 - 2024. 9. :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승인 - 2025. 3.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6. 6. : 복합센터 공사준공(예정) - 2027. 12. : 역량강화 완료 - 사업준공(예정)	20	거창군 시 행
	위천면 (테마형)	2023 ~ 2025	500	▶ 청년문화 활력소(모여락 센터) 조성 ⇒ 사업착공(2024. 6.) - 2024. 12. : 사업준공(예정)	50	거창군 시 행
	웅양면 (테마형)	2024 ~ 2025	500	▶ 웅양 mom편한 돌봄센터 조성 ⇒ 기본계획 수립 중 - 2024. 12. :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승인 - 2025. 4.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5. 12. : 사업준공(예정)	15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가북면 (테마형)	2024 ~ 2025	500	▶ 행복나눔 전파소 조성 ⇒ 기본계획 수립 중 - 2024. 12. :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승인 - 2025. 4.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5. 12. : 사업준공(예정)	15	거창군 시 행
기 초 생 활 거 점 조 성	가조면 (통합)	2023 ~ 2027	6,000	▶ 문화드림 청년마루 신축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추진 중 - 2024. 7.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11. :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설계공모 - 2025. 6.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7. 12. : 사업준공(예정)	20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진도 (%)	비고	
기 초 생 활 거 점 조 성	주상면 (1단계)	2023 ~ 2027	4,000	▶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추진 중 - 2024. 7.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11. :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설계공모 - 2025. 6.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7. 12. : 사업준공(예정)	15	거창군 시 행
	마리면 (1단계)	2023 ~ 2027	4,000	▶ 마리면청사 + 문화센터 복합타운 건립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추진 중 - 2024. 7.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11. :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설계공모 - 2025. 6.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7. 12. : 사업준공(예정)	15	거창군 시 행
	신원면 (1단계)	2023 ~ 2027	4,000	▶ 평생교육센터 조성(신원 사랑누리센터 증축)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추진 중 - 2024. 2.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11. :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 2025. 6.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7. 12. : 사업준공(예정)	20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웅양면 (2단계)	2025 ~ 2029	1,000	▶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 및 문화, 복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2025. 6.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5. 7. : 착수 - 2029. 12. : 사업완료	-	거창군 시 행
	위천면 (2단계)	2025 ~ 2029	1,000		-	거창군 시 행
	북상면 (2단계)	2025 ~ 2029	1,000		-	거창군 시 행
남상면 (2단계)	2025 ~ 2029	1,000	-		거창군 시 행	
취 약	임 불 (남상)	2023 ~ 2026	2,253	▶ 도로확포장 A=96㎡, 주차장 조성 A=245㎡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사유시설(지붕개량 및 집수리 등) 정비 지원 등 ▶ 역량강화(교육 및 견학, 재해·재난 안전교육 등) ⇒ 2024년 연내 기본계획수립 → 25년 시행 계획 수립 후 26년 사업준공(예정)	20	거창군 시행

- 가조면 거점센터 신축은 2층규모, 연면적 637㎡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 1층에는 공유부엌, 공유세탁실, 다목적 홀을 배치하고, 2층에는 헬스장과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중심지 기능을 보완할 계획으로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건물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던 사업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주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와 소득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